

# Global News

## 1. 2018 BlackRock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- 지난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(BlackRock)은 미국 상장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(Proxy Voting Guidelines)을 개정함<sup>26)</sup>
  - 이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투자자 스튜어드십(Investment Stewardship), 지배구조와 주주관련 원칙(Corporate Governance and Engagment Principle)과 블랙락 CEO인 Laurence D. Fink가 주요 투자 상장회사 CEO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<sup>27)</sup>
    -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항목	내용
이사회 독립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사회 내 과반수 독립이사 및 주요 위원회(감사위원회, 보상위원회, 임원후보추천/지배구조 위원회) 전원의 독립성 확보를 권고함</li> <li>- 창립자(founders), 친인척(family members), 다른 사업상 이해관계자(other business relationships)의 독립성 판단기준은 SEC보다 엄격함</li> <li>- 독립성 저해요소로 1)최근 5개년 내 해당 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서 고위 임원으로 재직, 2)회사의 창립자 지위, 3)회사 또는 회사 고위 임원과 중요 사업적 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, 4)회사의 고위 임원 또는 창립자와 혈연관계, 5)회사의 지분을 20% 이상 소유 등 제시함</li> </ul>
이사회 감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)이사회가 내부회계나 내부감사를 감독하는데 실패한 경우, 2)경영진 보수가 회사 성과 및 비교군(peer)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경우, 3)이사회가 과반수 독립이사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, 4)이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행동하는데 실패한 경우, 5) 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 위원회 위원 또는 이사 선임 시 반대권고 함</li> </ul>
이사의 과도한 겸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EO는 1개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재직하고, 사외이사는 최대 4개 상장회사에 재직할 것을 권장함</li> </ul>
이사회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사회가 주주의 우려사항(concerns)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위원 또는 이사 선임 시 반대권고 함</li> </ul>
이사회 다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사회 다양성이 결여된 경우 임원후보추천/지배구조 위원회 위원 선임 시 반대권고 함</li> </ul>
이사 시차임기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사 재선임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을 권장하고, 시차임기제 폐지를 요구하는 제안(proposals)을 지지함</li> </ul>
이사회 리더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, 리더십 체계는 이사회 결정을 따르나 CEO-의장 역할이 통합된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를 두는 것을 권장함</li> <li>-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부의사항을 건의하고 사외이사 회의를 소집·주재할 권한이 있어야 함</li> </ul>
차등의결권 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차등의결권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회사의 경우, 정기적으로 또는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주식 구조를 검토하고 회사의 위임장 내 경영진 제안사항으로 자본구조에 대한 정기적인 주주 승인을 권장함</li> </ul>

26) BLACKROCK, 2018.2, "Proxy voting guidelines for U.S. securities"

27) <https://corpgov.law.harvard.edu/2018/02/09/updated-blackrock-proxy-voting-guidelines/>

항목	내용
보수 환수제안	- 1)잘못된 재무정보 또는 비즈니스 관행에 근거하여 보수를 수령한 자, 2)주주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자, 3)회사의 명성을 훼손시키거나 검찰 수사를 받은 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주주 제안을 지지함
이사후보자지명권 개정	- 시장에 표준화된 proxy access proposal(최대 20명의 주주가 모여 전체 주식의 3%이상을 최소 3년간 보유한 경우 이사 2명 또는 이사회 내 20%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 부여, 3/3/20/20)을 지지함
환경·사회적 리스크 보고와 주주관여	- 회사가 사업 상 중대한 리스크와 기회를 정의(identify)하고 보고(report)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을 권장함 - 주요 E&S 지표, 지표별 성과, 비교군 벤치마킹 및 검증 절차, 채택한 글로벌 기준, 준법관리 내역 등을 보고할 것을 권장함 - 중대한 E&S(Environmental&Social)사안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회사의 경우, 이사 선임에 반대하거나 E&S 관련 주주 제안을 지지함
기타 이슈	- 위 내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항(감사, 자본구조 주주제안, 합병, 자산 양수도, 특수한 거래, 경영진 보수, 주식 연계 보상, 기타 지배구조 관련 사항)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음